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朴芝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0.

발 의 자 : 朴芝源 · 윤준병 · 김성희
김의겸 · 안호영 · 임오경
문대림 · 이춘석 · 김남근
권향엽 · 허영 · 박희승
문금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, 청정수소를 생산·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, 저장·운송·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청정수소의 개발·생산·저장·운송·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,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 2).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2항 전단 중 “청정수소를 생산·사용하는 자에 대하여”를 “청정수소의 생산·사용·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대상, 기준, 규모, 기간,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는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등급에 따라 차등하여”를 “등급, 생산비용,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청정수소의 생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
2. 청정수소 저장시설, 운송시설, 배관시설, 충전시설 또는 공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
3. 청정수소의 생산단가와 시장가격 간 차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4. 청정수소의 품질관리, 인증, 계량, 거래 또는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시설·장비·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자

5. 청정수소를 사용하거나 활용설비를 구축·운영하는 자
 6. 그 밖에 청정수소의 생산·저장·운송·공급·판매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산업 기여도, 기술 성숙도, 국산 기자재 및 설비 활용도, 공급망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조건 및 금액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2(청정수소의 인증 등)	제25조의2(청정수소의 인증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<u>청정수소를 생산·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	② ----- <u>청정수소의 생산·사용·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대상, 기준, 규모, 기간,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는 등 ---. --- 등급, 생산비용,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---.</u>
<u><신 설></u>	<u>1. 청정수소의 생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</u>
<u><신 설></u>	<u>2. 청정수소 저장시설, 운송시설, 배관시설, 충전시설 또는 공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</u>
<u><신 설></u>	<u>3. 청정수소의 생산단가와 시장가격 간 차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</u>
<u><신 설></u>	<u>4. 청정수소의 품질관리, 인증, 계량, 거래 또는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시설·장비·시스</u>

<u><신 설></u>	<u>템을 구축·운영하는 자</u>
<u><신 설></u>	<u>5. 청정수소를 사용하거나 활용 설비를 구축·운영하는 자</u>
<u><신 설></u>	<u>6. 그 밖에 청정수소의 생산·저장·운송·공급·판매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</u>
<u><신 설></u>	<u>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산업 기여도, 기술 성숙도, 국산 기자재 및 설비 활용도, 공급망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조건 및 금액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수 있다.</u>
<u>③ ~ ⑧ (생 략)</u>	<u>④ ~ ⑨ (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)</u>